

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1 월 11 일

여수시장 2023.11.11



여수시 조례 제1911호

붙임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 1부

##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장애인시설 점검)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·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b>제8조(장애인시설 점검)</b>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·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.
<b>제8조·제9조 (생 략)</b>	<b>제9조·제10조 (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)</b>